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309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규율하는 이 조례에 그 입법취지를 담기에는 관계법령과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 안 제22조3에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의 주요 내용

- 법체계상 조례의 목적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으로 수정하여 안 제22조의3항에 반영함 (안 제1조).
- 출자·출연 기관 적용범위를 현행과 같이 서울시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 함(안 제2조).

- 중복 규정한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함(안 제3조).
- 조의 제목을 ‘출자·출연의 동의’로 하고, 시장이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2의3).
- 출자·출연 동의안의 일부 제출서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제22의4).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를 각각 현행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한다.

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제1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
| <p>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u>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p> | <p>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u>출연하는 출자기관</u>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p> | <p>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현행과 같음)</p> |
| <p>제3조(조직·인력 운용) <u>출자·출연 기관의 장</u>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p> | <p>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u>출자·출연 기관의 장</u>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p> | <p>제3조(조직·인력 운용) (현행과 같음)</p> |

| 현 | 행 | 개정안 | 수정안 |
|---|-------|---|---|
| | <신 설> | <p>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삭 제> |
| | <신 설> | <p>제22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의회의 동의를</u> 받아야 한다.</p> | <p>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u> 받아야 한다.</p> |
| | <신 설> | <p>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①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 | <p>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개정안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 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u>6.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u> <u>7. 기타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u> <u>8. 출자·출연 기관 성과 보고서</u> | 6. <u>이사회 회의록</u> 7. <u>결산 보고서</u> 8. <u>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u>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
| <신 설> | <p>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